BA2044 - SIBAZBAN - SI

[V] 외래 []입원 ([]퇴원 []중간)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

환자등록번호				환자 성명		진료기간				야간(공휴일)진료				
32				부장원		2025-04-21			[]야간 []공휴일					
진료과목			질병군(DRG)번호			병실			영수	명수중번호(연월-일련번호)				
재활의학과							직장조합			2504-00053				
				급여					금액산정니	내용				
항목			일부 본인부담		전액	비급여	@ 7	그리네 초애						
			본인부담금	공단부담금	본인부담		⑥ 진료비 총액 (①+②+③+④)			218,300		218,300		
	신	찰 료	3,948	9,212	0	0								
	입원료	1인실	0	0	0	0	① 공단부담 총액 (②+⑤) ⑧ 환자부담 총액 (①-⑤)+③+④					92,200		
		2 · 3인실	0	0	0	0								
		4인실 이상	0	0	0	0						126,100		
		식대	0	0	0	0	(0-	(0 9/1919						
	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	행위료	0	0	0	0	⑨ 이미 납부한 금액⑩ 납부할 금액(8-⑨)			0		0		
71		약품비 행위료	0	0	0	60,000								
보항목		약품비	0	0	0	00,000				126,100		126,100		
		1	35,562		0	0								
	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		0	02,570	0	0	카드					126,100		
		사료	0	0	0	0	① 납부 현금영					0		
	영상진단료		0	0	0	0	한 금액 현금		NAME OF TAXABLE PARTY.			0		
	방사선치료료		0	0	0	0						126,100		
	치료재료대		0	0	0	0	납부하지 않	않은 금액(⑩-⑪)				0		
	재활 및 물리치료료		0	0	6,600	20,000	BIOING	현금영수증 ()						
	정신요법료		0	0	0	0	신분확인번호							
	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		0	0	0	0	현금영수증 승인번호							
선 택 항 목	CT 진단료		0	0	0	0	*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							
	MRI 진단료		0	0	0	0								
	חרד דורום		0	0	0	0								
	ACTITICIS		0	0	0	0								
	보철・교정료		0	0	0	0								
	제증명수수료		0	0	0	0								
			0	0	0	0								
	선별급여		0	0	0	0								
65세 이상 등 정액			0	0	0	0								
질병군 포괄수가 기타			0	0	0	0								
			0	0	0	0								
	합기	4	① 39,500	2 92,200	3 6,600	80,000								
	상한액 :	조과금	⑤ 0											
	요양기관	종류	[V] 의원급ㆍ	보건기관	[]병원급	[] 종합	병원 [] 상급종합병원						
사업자등록번호			155-98-01719			상호 굿본지	내활의학과 삼성		전화번호	02-5	49-042	7-98-01719		
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미켈란107 2층							仏 五	최력성 ****		146 [34]				
2025년 4월 21일 항목별 설명										20 264 707 444 22		भूते करियेत क्षा १ प्रश्नित स्थल क्षा १ प्रश्नित स्थल		
									일반사항 안내					
2	1. 일부 본인부당: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름을 적용하나, 요양기관 지역, 요양기관의 종별, 환자 자격, 선별급여 (국민건강보험법)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) 여부,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- 외래 본인부당률: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% ~ 60%(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~ 2,500원. 0% ~ 15%) 등 - 입원 본인부당률: 20%(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% ~ 10%) 등 - 입원 본인부당률: 20%(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% ~ 10%) 등 * 식대: 50%(의료급여는 20%)/CT·MRI·PET: 외래 본인부담률(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) / 선별급여(1. 이 계산서·영수증에 대한 세부 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. 2. 국민건강보험법」 제48조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 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(121) 1644-2000, 홈페이지: www.hira. or.kr)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 3. 계산서·영수증은 「소득세법」 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「조세뿍레제한법」에 따른 현금 영수증 공제신청(현금영수증 승인 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)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.			

주(註): 1.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, 야간(공휴일) 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. 2. 환자가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비 식별화된 가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.

4. '질병군포괄수가'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3항제2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
하나의 행위로 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. 다만, 해당 질병군의 입원진료와 관련되는 의료행위라도

비급여대상이나 이승처치료 등 포괄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위 표의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란에 합산하여 표기됩니다.

영수증(지출증빙)'은 공제신청에

홈페이지: http://현금영수증.kr)

(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

사용할 수 없습니다.